

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       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         (議事権 3打)</p> <p>(參 照)          '98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          (뒤에 실음)</p> <p>○副議長 崔鍾牛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,          이번 회기에는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를 맞아 서울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비대한 조직을 혁신하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앞으로도 끊임없는 시정개혁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/p> <p>이상으로 제107회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제2차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.</p> <p>산회를 선포합니다.          (議事権 3打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18時 58分 散會)</p>	<p>신설 한다.</p> <p>제 3 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다목을 적용한다.          ②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.</p> <p>제 4 조(종전의 제3조) 제목 및 본문중 “국내여비규정”을 각각 “공무원여비규정”으로 하고, 동조본문중 “국내여비지급”을 “여비지급”으로 “이하 이 조에서”를 “이하”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영 제8조제1항·제3항 및 제16조제3항단서”를 “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”로 하며, 동조제2호중 “영 제8조제3항 재경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“영 제16조제3항단서”를 “영 제17조제1항 단서”로 “총무처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영 제17조제1항 단서”를 “영 제18조제1항 단서”로 하며,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5호·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</p> <p>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6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제2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&lt;별표1&gt; 제1호의 해당공무원 1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동호의 해당공무원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 1중 “계약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본다.</p> <p>제 4 조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</p>
---	---

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산업진흥대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중점 육성대상 산업의 선정·육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외국자본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공장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산업유치지구 등 산업지구의 효율적 개발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</li> <li>7. 기타 주요 경제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·부의하는 안건</li> </ol> <p>제 3 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진흥 정책에 대하여 경험과 견장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</li> <li>2. 시의회 의원</li> <li>3. 경제단체의 관계자</li> <li>4.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의 임직원</li> <li>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</li> </ol> <p>제 4 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과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   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5 조(위원회 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역경제국장이 된다.     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</li> <li>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</li> </ol>	<p>3.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</p> <p>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·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제1항 및 제2항의 간사와는 별도로 자문 및 연구활동 간사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회 회의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.     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시의 소속 행정기관·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     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 8 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 9 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</p>
---	---

10 (第107回-第2次)

<p>하다.</p> <p>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실업대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 2 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합적인 취업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체계·방법·훈련내용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생산직·일용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사무직·전문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대졸미취업자 등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문화·환경분야에의 고용추진 등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기타 실업대책 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고용창출방안 등 실업대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</li> <li>9. 기타 주요 실업대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·부의하는 안건</li> </ol> <p>제 3 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실업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의견을 갖춘</li> </ol>	<p>대학교수 또는 전문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시의회 의원</li> <li>3. 경제단체의 관계자</li> <li>4.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의 임직원</li> <li>5.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시민단체</li> <li>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</li> </ol> <p>제 4 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한다.        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5 조(위원회 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실업대책을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.         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</li> <li>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</li> <li>3.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</li> <li>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·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제1항 및 제2항의 간사와는 별도로 자문 및 연구활동 간사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회 회의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.         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7 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시의 소속 행정기관·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</p>
--	--